

CPQ 센터 규정

(Culture Producing Qualification)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21세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시대를 맞아 방송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및 방송자격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여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범국가적 차원의 고용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명칭 및 소재) 본 센터는 호서대학교 CPQ 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며, 호서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 3조 (사업) 본 센터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방송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 사업
2. 방송문화산업과 관련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
3. 방송문화산업과 관련한 인력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
4. 방송문화산업과 관련한 세미나 포럼 등의 운영
5. 방송문화산업과 관련하여 기타 사업 추진

제 2 장 조 직

제 4조 (조직) 센터에는 각종 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프로듀서 분과 (기술, 연출, 제작)
2. 마케터 분과 (이벤트, PR, 디자인)
3. 엔터테이너 분과 (작가, 음악, 매니저, 액터)

제 5조 (구성)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(개정 2015.09.01)

- | | |
|---------|------|
| 1. 센터장 | 1명 |
| 2. 부센터장 | 1명 |
| 3. 연구원 | 약간 명 |
| 4. 행정직원 | 약간 명 |
| 5. 조교 | 약간 명 |

제 6조 (임원) 센터에는 센터장 1명, 부센터장 1명을 임원으로 둔다.

제 7조 (임명) ① 센터장은 설치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5.09.01)

② 부센터장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5.09.01)

③ 연구원, 행정직원 및 조교 등은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 8조 (직무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
제 3 장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

제 9조 (위원회) 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

- 가.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, 연구방향의 설정, 예·결산 및 사업계획, 기타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나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부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 기타 위원은 학내·외 전문 인사 중에 센터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다.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중 간사를 한다.
 - 라.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마.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2. 자문위원회
- 가. 센터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나.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호서대학교 2인,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인, 외부 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관계자 5인으로 구성되며, 센터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5.09.01)
 - 다.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3. CPQ 자격인증위원회
- 가. 센터의 자격인증심의를 위하여 CPQ 자격인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나. CPQ 자격인증위원회의 위원은 3개 코스(프로듀서, 마케터, 엔터테이너) 각 5명의 산학연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, 센터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 (개정 2015.09.01)
 - 다. CPQ 자격인증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운영 및 재정

- 제10조 (재정)** ① 센터의 재정은 각종 지원금, 연구비, 용역비, 사업수익금, 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제11조 (재산의 귀속)** 센터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대학교에 귀속한다.(조변경, 개정 2015.09.01)

제 5 장 보 고

- 제12조 (보고)**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조변경, 개정 2015.09.01)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 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 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 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 6 장 보 칙

제13조 (준용)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
제14조 (운영세칙)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09.01)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시행세칙)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